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44회 임시회(2020. 10.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33

2020. 10. 27.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

나. 제 안 일 : 2020. 10. 12.

다. 회 부 일 : 2020. 10. 13.

2. 제출이유

‘A형간염[1]’ 항원·항체 검사와 예방접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검사 종목 추가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 급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A형간염’ 항원·항체 검사와 예방접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검사종목 추가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별표 조항 개정)

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인 ‘1·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별표 조항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 간세포 혹은 간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 물 등 입을 통해 감염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9. 3.~ 9. 23.(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최근 ‘A형 간염’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조기 예방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검사종목 추가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 급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여 건강도시 마포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별표] 2호 가목중 ‘B형간염’을 ‘간염’으로 개정하는 것은 A형 간염을 검사종목에 추가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국민소득과 수명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인구집단에 대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별표 조항 조문의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기존 장애인 급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별표 비고 무료대상자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

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3급 장애인도 무료대상자에 포함됨.

다. 종합의견

○ 2019년 A형간염 환자가 ’11년 전수감시 시작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의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20년 2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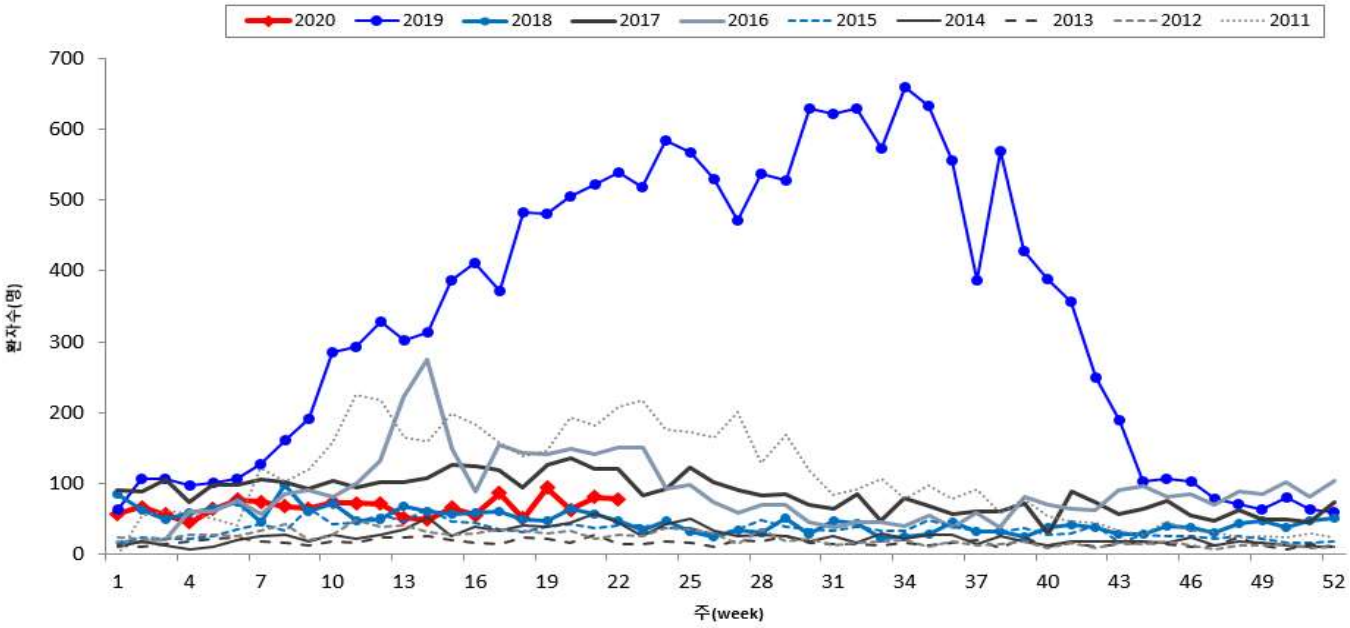

○ 더불어 A형 간염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A형간염이 2020년부터 제2급 감염병[2]으로 변경됨에 따라 A형 간염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긋남이 없어 보임.

○ 또한 안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3항 검사항목에 ‘A형간염검사’ 항목 신설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다양한 검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검사수수료 책정시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표 2. 자치구별 A형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현황>

연번	자치구	A형간염검사 시행여부(가격, 원)	A형간염예방접종 시행여부(가격, 원)	비고
1	종로구	O(15,000)	O(소아:13,600, 성인:32,400)	
2	용산구	O(15,000)	X	
3	영등포구	O(16,000)	X	
4	관악구	O(15,000)	X	
5	동작구	O(15,000)	X	
6	도봉구	O(11,000)	X	
7	노원구	O(15,000)	X	
8	광진구	O(13,000)	X	
9	성북구	O(15,000)	O(소아:12,900, 성인:35,400)	외부수탁
10	서대문구	O(15,000)	X	
11	강서구	O(15,000)	X	
12	구로구	O(15,000)	X	
13	양천구	O(25,450)	X	
14	동대문구	O(15,000)	○(성인:35,300)	
15	송파구	O(14,500)	X	
16	강남구	O(15,000)	X	
17	서초구	O(15,050)	X	
18	성동구	O(19,000)	O(소아:13,200 , 성인:35,400)	
19	중구	O(16,000)	X	
20	은평구	O(15,000)	X	
21	금천구	O(17,000)	X	
22	마포구	X	X	
23	강동구	X	X	
24	강북구	X	X	C형간염검사 실시(5,320)
25	중랑구	X	X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